

(제127회 총회) 조합원 운영위원 선거관리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제127회 총회에서 실시하는 조합원 운영위원 선거에 관하여 「조합원 운영위원 선거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 제33조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은 건설공제조합 기획조정팀에 둔다.

제3조(선출 위원의 수) 제1선거(대규모출자자, 출자좌수 누적 기준 상위 20% 이내)에서 2명을, 제2선거(대규모출자자 이외)에서 11명을 선출한다.

제4조(선거구 획정) ①제1선거의 선거구는 서울, 그 외 지역의 2개로 하고, 제127회 총회에서는 서울 선거구 1명, 그 외 지역 선거구 1명을 각각 선출한다.

②제2선거의 선거구는 서울, 경기, 충남·충북·대전, 전남·전북·광주, 경남·부산·울산, 경북·강원·대구, 인천·제주의 7개로 하고, 제127회 총회에서는 서울 선거구 1명, 경기 선거구 1명, 충남·충북·대전 선거구 2명, 전남·전북·광주 선거구 2명, 경남·부산·울산 선거구 2명, 경북·강원·대구 선거구 2명, 인천·제주 선거구 1명을 각각 선출한다.

제5조(선출 정수 미달 등) 선거구에 입후보한 자가 없거나 선출 정수에 미달한 경우 해당 선거구에 대하여는 차기 총회에서 추가로 선거를 실시한다.

제6조(이중 추천) ①동일인이 후보자를 이중으로 추천한 경우 그 자가 행한 모든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무효로 한다.

②전항에 따른 추천의 무효로 인하여 규정 제20조제1항 각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후보자는 후보자등록마감 전까지 다른 추천인의 추천을 받아 보완할 수 있다.

제7조(후보자등록 절차 등) ①후보자등록은 방문접수에 한하며, 등록기간은 선거 공고일부터 후보자등록 마감일까지(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 ②등록장소는 조합 본사 19층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또는 각 영업점으로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류를 제출받은 영업점은 관련서류 일체를 지체없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고 그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 제출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 ③전항의 경우 후보자 개인 제작 홍보물 등 선거공고시 기재된 제출서류 외의 자료에 대해서는 접수를 거절해야 한다.
- ④후보자등록 요건 심사 후 선거관리위원장인을 날인한 후보자등록증을 등록접수 익일 팩스 전송 후 원본을 우편으로 발송한다.

제8조(기호 부여) ①후보자등록이 마감되는 즉시 각 선거(선거구)별 후보자 접수 순에 의하여 기호를 일괄 부여한다.

②기호는 순서가 가장 앞선 자에게 1번을 부여하고 이후 차례대로 정수의 번호를 부여한다.

제9조(출자좌수 위임) ①출자좌수의 위임은 소속 영업점 또는 제2선거의 선거구별 동일 선거구에 소재하는 다른 영업점의 대의원에 대하여 할 수 있다.

②위임장 제출 방법으로 전자위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외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서면위임은 법인인감증명서(개인은 개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경우 위임장 제출기한은 투표일 전일 오후 6시까지로 하며, 그 이후에 등록 또는 접수된 위임장은 무효로 한다.

제10조(이익 제공 관련 위반행위) ①규정 제24조제2항제1호의 이익 제공과 관련한 규정 제25조 제3항의 제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 제공 : 경고
2. 전호의 금액 이하 금품 제공 : 시정지시

②전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제공은 이익 제공 관련 위반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5만원(경조사비를 대신하는 화환·조화 10만원) 이하 금품 제공
2. 관행적인 친목 도모 행위 등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의 것

제11조(선거운동 위반행위 제재 및 공표) ①선거운동 위반행위가 접수되면 그로부터 3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심의해야 한다.

②심의 결과 규정 제25조에 따라 제재한 때에는 규정 제12조 제3항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

③제1항 및 제14조와 관련하여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건설공제조합 감사실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후보자 소견발표) ①투표를 실시하기 전 후보자별 각 2분의 범위 내에서 소견발표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무투표당선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발표는 후보자별 기호 순에 의하되, 제1선거(제4조 제1항의 선거구 순에 따름) 소견발표 후 제2선거(제4조 제2항의 선거구 순에 따름) 소견발표를 진행한다.

제13조(투표방법) ①투표는 전자투표의 방법으로 한다.

②투표는 제1선거 선거구별로 투표 후 제2선거 선거구별로 투표를 실시하며, 총회 참석 대의원(수임좌수 포함) 전원이 각 선거구별 후보자에 대하여 1회씩 투표를 실시한다.

제14조(이의신청) ①선거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당선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사항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단, 사실관계 확인 등이 필요하여 심의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의결로써 통보 기간을 15일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2024. 2. 7.)

이 지침은 202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